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업능력정책국 밑에 두는 일
학습병행정책과의 명칭을 기업훈련지원과로 변경하고,

직업능력정책국 및 청년고용정책관 등 부내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제5호 중 “연계 및 운영”을 “연계·운영 및 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및 사업운영·관리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 및 총괄
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0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의 지도·감독
12.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13. 대학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 지원

제6조의2제11항제5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관련 관계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사업과의 연계”를 “연계”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제6조의2제1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8.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수립·운영

제6조의3제3항 중 “일학습병행정책과”를 “기업훈련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을 “등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

12. 중앙행정기관 직업훈련·인력양성 사업 관리·효율화

18의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계획 수립
제6조의3제7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2.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7. 국민의 직업능력 관련 경력설계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제6조의3제7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3제8항 중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을 “기업훈련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9호) 중 “일학습병행제 채용박람회 개최,”를 “일학습병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3호) 중 “일학습병행”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14호) 중 “사업주단체등”을 “사업주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및 중소기업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
2. 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및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제도 운영
3.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 운영

4.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의 직무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7.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8. 구직자·재직자 등에 대한 디지털·저탄소 분야 훈련 인프라 구축·개방 지원
10.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
12.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인적자원개발담당자 육성·관리
13.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내·외부평가 및 자격체계 구축 지원
15. 정부, 산업별 단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제8조제8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신청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1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따른”을 “따른 경영책임자 등

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산업재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총괄·관리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5.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및 조정·지원
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

제1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취업알선 처리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고용문화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6호”를 “제6의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4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수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제14조제14항제1호 중 “조치”를 “조치 및 수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관련 사항

제14조제15항제1호 중 “제13항제8호”를 “제13항제4호, 제6호,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관련 사항 중 건설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제14조제13항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14조제13항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강원·강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15조제8항제1호 중 “제14조제13항제8호”를 “제14조제13항제9호”로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제14조제13항제10호 및 제11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의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관할구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제15조제7항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⑩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u>연계 및 운영</u>	5. ----- <u>연계·운영 및 모니터링</u>
6. ~ 15. (생략)	6. ~ 15. (현행과 같음)
⑫ ~ ⑯ (생략)	⑫ ~ ⑯ (현행과 같음)
<17>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u>	3. <u>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및 사업운영·관리</u>
4. <u>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u>	4. <u>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운영 및 총괄</u>
5. <u>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u>	5. <u>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홍보에 관한 사항</u>
6. <u>시간선택제 도입·운영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u>	<삭 제>
7. <u>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업종·직종별 사업주단</u>	<삭 제>

<u>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u>	
<u>운영에 관한 사항</u>	
8. <u>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워크</u>	<u><삭 제></u>
<u>넷 운영 및 고용서비스 지원</u>	
<u>에 관한 사항</u>	
9. <u>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u>	<u><삭 제></u>
<u>적합직무 발굴 및 우수사례</u>	
<u>확산 등 인식개선 · 홍보에 관</u>	
<u>한 사항</u>	
10. <u>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고</u>	<u><삭 제></u>
<u>용동향 파악 및 통계에 관한</u>	
<u>사항</u>	
11. <u>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sm</u>	<u><삭 제></u>
<u>art work) 확산에 관한 사항</u>	
12. (생 략)	6.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u>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및</u>	<u><삭 제></u>
<u>지원금 사업의 운영</u>	
⑱ · ⑲ (생 략)	⑱ · ⑲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	⑩ -----
항을 분장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u>	<u><삭 제></u>
<u>사업의 수립 · 운영</u>	
<u><신 설></u>	11. <u>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u>

11. (생 략)

<신 설>

<신 설>

12. (생 략)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성과보상기금 운용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대학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 지원

⑫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한국잡월드 등 직업체험센터
의 지도·감독

7.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인프라 구축

터의 지도·감독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13. 대학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사업 지원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⑪ -----
-----.

1. ~ 4. (현행과 같음)

5.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관련 관계기관 ----- 연
계-----

6. (현행과 같음)

7.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인프라 구축

⑫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8. · 9. (생 략)

10.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 · 감독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
정책과 · 직업능력평가과 · 인적
자원개발과 및 일학습병행정책
과를 둔다.

④ (생 략)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
립

4. · 5. (생 략)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 · 시행

7. ~ 11. (생 략)

<신 설>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

8.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수립 · 운영

6. · 7.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삭 제>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업훈련지원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직업능력
개발기본계획 수립

4. · 5. (현행과 같음)

6. ----- 등 인력수급 전
망을 반영한 -----

7. ~ 11. (현행과 같음)

12. 중앙행정기관 직업훈련·인
력양성 사업 관리·효율화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 18의4. (생략) <u><신설></u> 19. (생략) ⑥ (생략)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신설></u>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3. 삭제 4. ~ 6. (생략) 7.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상담에 관한 사항 <u><신설></u> 9. ~ 17. (생략) 18. <u>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계획 수립</u> 19. ~ 24. (생략)	----- ----- 14. ~ 18의4. (현행과 같음) 18의5. <u>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계획 수립</u> 1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u>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u> 2. <u>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u> 4. ~ 6. (현행과 같음) 7. <u>국민의 직업능력 관련 경력 설계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u> 8. <u>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u> 9. ~ 17. (현행과 같음) <u><삭제></u> 19. ~ 24. (현행과 같음)
---	---

⑧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생 략)

2.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지원

4. 정부, 산업별 단체, 교육훈련
기관 등 관련기관·단체의 일
학습병행 지원체계 구축

5.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현장
교사·인적자원개발담당자 육
성·관리

6. 일학습병행 이수자에 대한
평가·자격체계 구축 지원

<신 설>

7. (생 략)

8. 정규교육과정(재학생) 일학
습병행제 확산

⑧ 기업훈련지원과장-----
-----.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및 중소기업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

9. (현행 제1호와 같음)

2. 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체
계 구축 지원 및 고숙련·신
기술 분야 훈련제도 운영

3.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
가훈련 운영

4.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 활
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삭 제>

6.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의 직
무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7.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
엄 운영·지원

14. (현행 제7호와 같음)

8. 구직자·재직자 등에 대한
디지털·저탄소 분야 훈련 인

9. <u>일학습병행제 채용박람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홍보지원</u> 10. <u>일학습병행제 모니터링 및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조정</u> 11. <u>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촉진정책의 수립·지원</u> 12. <u>일학습병행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u>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u> 14. <u>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점검</u> 15. <u>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u>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⑦ (생략) ⑧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	<u>프라 구축·개방 지원</u> 16. <u>일학습병행</u> ----- -- 10. <u>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u> <u><삭 제></u> 12. <u>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인적자원개발담당자 육성·관리</u> 13. <u>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내·외부평가 및 자격체계 구축 지원</u> 11. <u>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 ---</u> 5. ----- <u>사업주단체 등</u>----- 15. <u>정부, 산업별 단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u>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⑨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⑩ · ⑪ (생략)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산업재해”라 한다) 동향 파악

10. (생략)

⑬ · ⑭ (생략)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관리

-----.

1. ~ 14. (현행과 같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신청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에 관한 사항

⑨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현행과 같음)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이하 “중대산업재해”라 한다) <u>관련 정책의 총괄·관리</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u>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등에 대한 총괄·지원</u>	4. <u>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u>
5. <u>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u>	5. <u>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및 조정·지원</u>
6. <u>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u>	6. ----- <u>따른</u> <u>경영책임자 등의</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u>	8. <u>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u>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③ -----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17. (생략)

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 28. (생략)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⑤ ~ ⑫ (생략)

⑬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취업알선 처리 등의 모니 터링에 관한 사항

7. ~ 17. (현행과 같음)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고용문화 개선 지원에 관
한 사항

19. ~ 28. (현행과 같음)

④ -----
----- 제6의2호 -----

[illegible]

⑤ ~ ⑫ (현행과 같음)

⑬ -----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등
에 관한 사항

<신설>

5. ~ 11. (생략)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
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
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
항은 제외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 14.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 조사 및
수사 -----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장에 대한 원인조사 및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
사

6.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⑭ -----

---. -----

-----.

1. -----

----- 조치 및
수사

2.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
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
호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관련

15. (생략)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u>제13항제8호</u>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16>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2. (생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u>사항</u> 15. (현행과 같음) ⑮ ----- ----- ----- -----. ----- ----- ----- ----- ----- ----- -----. 1. <u>제13항제4호, 제6호, 제9호</u>----- 2. ~ 5. (현행과 같음)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관련 사항 중 건설업에 관한 사항</u> 7.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	--

⑧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후단 신설>

1. 제14조제13항제8호의 사항
2. ~ 5. (생략)
- ⑨ (생략)

(8) -----

----- . 강원지청의 산재예방
지도과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
과 함께 제14조제13항제4호, 제
5호, 제6호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14조제13항제4호, 제5호, 제6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강원·강
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
소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
항을 관할한다.

1. 제14조제13항제9호-----
2. ~ 5. (현행과 같음)
- ⑨ (현행과 같음)